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5.1.21.)에 따라
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, 학교복합
시설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,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
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규정(안
제4조의2)

나. 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·취소에
관한 규정(안 제6조)

다. 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
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 진행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면책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2.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3. 업무 추진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직원의 면책에 대한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면책 대상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·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

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1호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.
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.
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
1. 조례 등에 근거한 직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설치
 2. 「민법」이나 「지방공기업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지정
-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1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

2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, 장비·시설을 갖추는 것
 3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추는 것
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④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.
1.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 2.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 3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운영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제4항제1호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, 그 밖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

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
2.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경비

②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른 설치비
2. 시설용도별 운영 현황, 학교 및 학생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른 운영 경비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학교복합시설의 범위) 「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2조<삭제></u> 1. ~ 3. <u><삭제></u> <u>제4조의2(면책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 시설운영주체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 1. <u>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</u> 2. <u>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</u> 3. <u>업무 추진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</u> <u>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 및 학교복 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직원의 면책에 대한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</u>

현행	개정안
	1. <u>면책 대상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·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.</u> 2.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1호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.</u> 3.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.</u> 4.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</u> <u>· 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</u> <u>제6조(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</u> <u>치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</u> <u>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</u> <u>중 하나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</u> <u>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조례 등에 근거한 직속기관 또</u> <u>는 소속기관 등의 설치</u> <u>2. 「민법」이나 「지방공기업</u> <u>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</u> <u>설립된 법인의 지정</u> <u>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</u> <u>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</u> <u>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</u> <u>추어야 한다.</u> <u>1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</u> <u>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</u> <u>2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</u> <u>한 사무실, 장비·시설을 갖추</u> <u>것</u> <u>3. 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</u> <u>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</u> <u>출 것</u> <u>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</u>

현행	개정안
	<u>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u> <u>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 <u>3.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</u> <u>④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.</u> <u>1.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</u> <u>2.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이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u> <u>3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운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영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⑤ <u>제4항제1호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u> <u>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법 제10조의 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</u> <u>2.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경비</u> ② <u>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른 설치비</u> <u>2. 시설용도별 운영 현황, 학교 및 학생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른 운영 경비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6172